

‘세계화’ 시대의 대학 자율화

박 거 용

상명여대 영어교육과 교수

1. 머리말

교 육문제에 국한하여 말하더라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은 대학의 구조적인 운영비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발본적 대책 없이 짧은 기간 안에 가시적 효과를 내려는 ‘사정의 해’였다고 볼 수 있다. 김문기 민자당 국회의원이 재단이사장인 상지대학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 사정 대상 제1호로 철퇴를 맞고 전시효과를 낸 셈이다. 94년은 ‘국제화·개방화’의 깃발 아래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적 후원책과 대학간 협력체계 수립 없이 대학간 무한경쟁이 부추겨지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였다.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그래서 서둘러 앞당겨 시행된 것으로 본다. 반면에 95년은 ‘자율화’의 시책 아래 철저한 단계적 준비

작업이 없는 ‘세계화’ 담론이 무성할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제화·세계화’는 추상적인 개념만이 아니고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근대화와 관련된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의 압축 그리고 그에 따른 세계의 압축에 의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상의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문제는 교육주체인 교수와 학생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세계화’ 담론의 홍수에 휩쓸려서 실질적인 교육개혁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정세이다. 여기서는 우선 세계화 논리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의 대학 자율화 방안을 살펴보고,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자율화 논리의 배경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화를 위한 과제와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세계화'와 교육부·교개위의 자율화 방안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94년 1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급변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분야의 세계화 추진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고 말하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는 데 우선되어야 할 4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의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창조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세 계화된 새한국인을 기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①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목을 통합하는 방안과, ② 세계화에 걸맞게 고등학교 공동필수과목으로, 예를 들면 세계를 보는 눈과 세계 속에서 살아갈 능력을 기르는 세계사와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교육부는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주도하는 교원들이 세계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①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최신 교육 이론·방법·정보를 교원이 용이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립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교원연수과정을 95년도부터 4년제 사립대학에도 확대 개설하며, ② 연수주기를 단축하고, ③ 교원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연수과정 평가인정제와 연수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하며, ④ 현재의 기관중심적 지명연수제를 자율연수제로 전환하여 세

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연수유인체제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발전의 관건이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고, 국가경쟁력의 요체는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인식하에 대학의 창의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 위주의 대학 정책을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교육부는 대학이 전학이념과 특성에 따라 국제경쟁력이 요청되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21세기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 정원의 단계적 자율화 조치(95년 포괄승인제 도입, 96년 교육여건 연동제, 98년 이후 완전 자율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교육부는 대학의 외형적 교육구조와 관련된 정원 자율화 정책과 함께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학사운영체제에 관한 학사 자율화 정책을 제시했다. 따라서 ① 학기구분(2학기제), ② 수업일수(학기당 16주 이상), ③ 교양과목 학점배점기준(전체 과목 학점의 30%), ④ 졸업소요학점(140학점 이상), ⑤ 학기당 취득 학점(18학점 이상 21학점 이하) 등은 폐지하고 각 대학은 이러한 사항들을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교육부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강화하고 대학별 학사 운영 실태를 행·재정 지원 정책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최소한의 대학의 질적 수준을 확보해 나갈 계획도 강조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출범 1년만에 구성된 교개위는 94년 9월 5일 제1차 대통령 보고자료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

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교육개혁 11대 과제'(교육 재정의 확충/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대학 입학 제도 개선/학제의 다원화 및 탄력성 제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의 내실화/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양양/'학교 공동체' 중심 교육 운영/직업기술 교육의 혁신/교육법 및 교육 관계 법령 정비/사회교육 및 사회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우선 추진할 3대 과제'(교육 재정의 확충/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대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를 제시하였다.

그 후 교개위는 94년 9월 12일 '교육개혁을 위한 재원 확충방안' 제1차 대국민 공청회, 94년 11월 10일 '대학교육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I. 개혁의 기본 방향: 다양성의 신장/수월성의 추구/자율성의 확대/효율성의 극대화, II. 대학교육 개혁의 목표와 정책대안: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대학원 교육의 강화/대학 교육시설의 현대화 추진과 대학 교육과정의 혁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대학 행정체제의 개편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확충/대학평가와 지원체제의 혁신), 그리고 94년 11월 18일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방안' 제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교개위의 핵심 과제도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개위는 21세기가 정보화·국제화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주도하는 시대이며, 국제화 시대는 국경없는 경쟁과 협조의 시대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은 누가 새

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의 창조적 주도자가 되느냐의 문제이고, 이것은 곧 교육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교육의 질을 높이느냐로 귀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의 질 전쟁에서의 승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세계화'를 위한 정부 자율화 방안의 배경과 문제점

글로벌리제이션은 국제화, 세계화 또는 전자구화 등으로 번역되어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상호 의존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화는 최소한 민족국가를 전제한 위에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국가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반면에 세계화는 제2차 세계大战 이후 ① 핵의 위력과 환경오염이 전인류의 소멸과 연결된다는 인식, ② 국제연합 결성 후 세계인권선언과 세계의 평화질서에 대한 의식의 공유, ③ 잇따른 식민지 국가의 독립에 의한 전지구적 민주화 등과 같은 국가를 초월하는 현상을 더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공존과 공생을 더 강조하는 세계화는 '국가(제) 경쟁력 강화' 논리와는, '세계화' 개념에 이데올로기적 혐의를 두지 않는 한, 짹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는 이미 무의식처럼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93년말 UR 타결 이후 달라진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화·국제화·개방화 구호를 앞세우며 '국제경쟁력 강화 담론'을 유포하고 있다.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이 재촉한 미국, 일본, EC 국가 중심의 세계시장재

편은 농산품·광산품·공산품 시장은 물론 세계 교역량에서(농산물과 광산물의 세계 교역량을 합한 양보다도 더 많은) 1/4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진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도록 강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보호주의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명분 아래 독점 재벌체제에 전폭적 지원을 하고 노동자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세계화' 기획을 전면화하고 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연구·교육·사회봉사의 임무를 떠맡고 있다고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정권과 금권(자본)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때에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대학은 반교육적인 정권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전락하면서 노동력의 기술적인 재생산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재생산까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능해 왔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과행적인 운영을 해온 역사를 가진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 그 선도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자율화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대학 자율화 방안은 재정적 지원을 포기한 정부의 보상책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대학정원 자율화처럼 교육시장개방과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이미 약효가 떨어진 약을 선심쓰듯이 주는 것과 같은 셈이다.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은 철저하게 교육마저 상품화하여 시장논리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교

육 재정의 혁명적 확보에 의한 대학의 육성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홀로서기만을 강조하면서 대학간 무한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대학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할 것이며, 나아가서 영세하고 역사가 짧거나 지방에 있는 대학의 폐교 위기는 물론이고 거대 대학의 문어발식 전국차원의 분교운영을 가시화할지도 모른다. 결국 교육부는 독점재벌체제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의 밀그림인 천민자본주의적 경제논리를 대학정책에서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의 과학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학정책이 이공계, 첨단과학 방향으로 중심점이 옮겨지면서 인문·교양교육의 위축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학 사회의 기능적 분업화도 개별대학의 자율성에 기초한 자기결정에 의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시행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연구기능보다 교육기능에 역점을 두는 '교육중심대학', 산업현장과 긴밀한 연계체제를 유지하는 '기술중심대학', 여전을 갖춘 소수의 대학원 중심체제의 '연구중심대학' 등 대학의 기능분업화는 그 구체적인 현실적 실행방법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력특성별(정예연구인력, 고등전문인력, 전문기술인력 등) 양성의 분업화 논리에 따른 이 계획은 대학교육을 도구화할 뿐만 아니라 대학을 또 다른 형태로 획일화 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96년부터 5년 주기로 시행키로 계획하였다가 94년부터 성급히 앞당겨 7년 주기로

실시키로 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존재이유는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권리와 자유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교개위의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방안도 기본적으로 진정한 대학의 자율이 아니라 사학재단의 자율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교개위는 사립학교법이 그 입법 목적에 충실히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그리고 공공성을 조화롭게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기본재산 및 수익사업이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이 빈약한 재단은 학교 나름의 독특한 교풍과 학풍을 세우지 못했고,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아온 정부는 사학의 학생선발, 교육내용의 선정, 학생정원 정책 등에 대한 규제·감독이 지나쳐서 국·공·사립학교를 획일적으로 운영해 왔다. 마찬가지로 과다한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은 독자적 경영권만을 앞세우면서 행정, 재정,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국가, 사회에 대한 공익성 보장이 미흡하고 사학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개위의 사립학교법 개정 이유는 대체로 타당하다. 그러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교개위는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 그리고 공공성을 누구의 입장과 권한을 대표하는 차원에서 파악하였는가?

교개위의 개정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①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2원화하는 것과, ②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

고 교수와 직원의 임면권과 학사에 관한 업무를 총장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개위의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현 사립학교법보다 더욱 시대착오적으로 퇴행적인 면을 보이는 조항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이다. 교개위는 ‘사립대학 행정, 재정, 인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경영의 주체인 이사회의 구성에서 교육관계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개정안은 ① 이사 상호간의 친족·혈족 관계 제한을 폐지하며, ② 이사의 수를 현행 규정보다 늘려 30인 이상(2인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③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설립자와 재산 출연자 및 이들이 추천한 자를 이사 총수의 3분의 2(2인은 2분의 1)가 되게 하며, ④ 이사 중 직원, 학부모, 동창회 등에서 추천한 자와 교수 가 3분의 1(2인은 2분의 1)이 되게 하고, 이 종 교수가 3분의 2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사 상호간의 친족·혈족 관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족벌체제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제한 규정을 오히려 풀어주는 것이다. 또한 이사장 친족 이사수를 3분의 2로 늘리는 것은 현행 5분의 2보다도 더 늘리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결정족수를 일반적으로 과반수(중요 사안은 2/3)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운영에 대한 재단의 전횡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다. 교개위의 2/3 개정안은 90년 3월 사립학교법 개악 이전의 1/3에서 개악후 2/5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재단에게 넘겨주자는 것이다. 이때 교수와

직원, 학부모, 동창회 등에서 추천한 자들이 이사가 된다는 것은 형식적인 조항이며, 이들 이사는 친족 이사의 둘러리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자주성을 확립하는 일은 이사장 친족 이사수가 최소한 3분의 1을 넘어서서는 현실화될 수 없다. 사학의 자주성은 재단만의 자주성이 아니라 대학 구성주체 모두의 자주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교육주체인 교수와 학생의 자율성을 억압하면서 재단의 자율성만을 보호해 주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교개위가 전혀 개정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사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수재임용제 폐지
- ② 사학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자치의 초석인 총·학장의 직선제(교개위는 대학 총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령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 ③ 심의·의결 기구이며 공식 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 설치(교개위는 교수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방법 및 기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령으로 제도화한다고 '대학교육 개혁 방안'에서 밝혔지만, 총장후보 추천위원회와 교수자치기구의 법제화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 ④ 예·결산 공개원칙 명문화 및 외부감사제 도입
- ⑤ 이미 현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제58조 2항(유무죄 판결 여부를 떠나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폐지
- ⑥ 차세대 학문연구 집단인 시간강사의 지위와 교수·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 ⑦ 해직 교수의 복직을 위한 특별조항 제정
- ⑧ 작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학원사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 등의 제정

교육의 정상화를 확립하고, 그 결과로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90년 개악되었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우회할 수 없으며, 관통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다른 한편, 대학사회 민주화와 자율을 위한 학칙은 어떻게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가? 대학의 학칙 상황을 거론하기 위하여 먼저 국립 대학의 학칙 개정과정을 살펴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교육부는 해방 이후부터 대학통제의 가장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편으로 개정학칙안의 교육부장관 승인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해 왔다. 현행 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국립학교의 학칙은 학교장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하여 대학 학칙의 제정과 개정도 교육부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의 학칙은 (사립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교육부의 지침이나 준칙에 의거해서 거의 획일화되었으며, 지금까지 학칙 제정·개정의 주체는 개별 대학이 아니라 교육부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 것으로 관행화되어 버렸다.

이러한 사정은 사립대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하에서 제정·개정되는 법인정관의 틀 안에서 기능하는 학칙도 결국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의 통제하에 들어가 있다. 개악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법인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해 준 인사권·재정권·규칙제정권 때문에 학칙은 이사회에서

제정·개정한다. 이렇게 제·개정되는 학칙은 독자적 대학경영권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운영비리와 각종 부조리를 유발할 수 있는 재단 '경영' 논리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진다.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학칙 승인제를 전면 폐지하고 학칙 보고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대학 학칙 제·개정권을 대학자율에 맡기며, 각 대학의 이념과 현실적이고 지리적인 실정에 맞추어서 대학발전을 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립대학도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주장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재단의 정관 개정과 대학 학칙의 자율적 결정을 이루어서 개별대학의 개성있는 학풍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 지난 91년 '6·3 외대 정원식 총리 밀가루 범벅사건' 이후 전국 78개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학원안정화 대책'이 거론되어 전국의 모든 대학 학칙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대학이 정권의 '이데올로기 국가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학칙을 포함한 교육관계법이 '억압적 국가장치'로 가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칙에 관한 관계법령에 대한 우선적인 개정이 없이 제시된 교육부의 학사 자율화 방안은 진정한 자율화 방안이 아닌 것이다.

학칙 가운데 가장 시급한 개정사항은 교수협의회를 대학 민주화와 자율화의 실천 구조로 공식기구, 심의·의결기구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인 의결기구로 확립되어야만 구체적인 학칙도 올바로 설 수 있다.

또한 총학생회가 학생 전체(과학생, 단과대학생, 전체학생)의 의견을 가장 민주적으로 왜

곡시키지 않고 수렴해 내어야만 학칙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대학의 존립 목적은 사실 후속세대에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와 사회봉사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보장하고 신장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즉,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확대는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칙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확대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때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그리고 직원노조가 각각 내부의 의견교환과 수렴 및 교협, 총학, 직원노조 간의 민주적 의견교환과 수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의 밑거름인 교육재정은 어떠한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는 17조 4천 6백 40억 원으로 공교육비 16조 7천 5백 78억 원보다도 많게 나타난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개위가 제시한 국민의 추가부담에 기초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더 이상 현실감을 갖지 못한다. 교육재정의 가장 근본적인 확충방안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육의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문제삼지 않고 있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과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에게 매출액 기준 교육투자액을 할당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를 이루할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충방안 없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정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4. 대학교육 정상화의 과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1,819명의 중·고교생들과 879명의 교원을 상대로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계화'라는 용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경쟁'(학생 25.5%, 교원 33.1%)과 '공존'(학생 24.9%, 교사 31.9%)이었으며, 세계화 시대에 중점적으로 배워야 할 내용은 '우리 전통문화와 민족 주체성'(학생 26.1%, 교원 39.6%)과 '외국에 대한 폭넓은 지식'(학생 33.3%, 교원 32.8%)이었다. 경쟁/공존, 민족주의/세계주의 대립항들은 이제 상호침투하며 상호의존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 틀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정상화된 교육의 결과이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군사정권하에서 과행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마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해 왔던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의 비정상성을 깨닫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쩌면 세계화로 가는 첨경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현대 대학의 위기상황에도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내에서 학문주의와 도구주의 사이의 긴장 증대, 교육과 연구 사이의 갈등 심화, 경험적 지식의 축적과 이론적 지식의 형성 사이의 갈등, 각 학문의 전문화에

따른 공통 지적 언어의 상실 등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대학교육의 민족성과 계급성 문제 못지 않게 심각한 오늘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속에서 추구되어야 할 대학교육 정상화의 과제들은 무엇인가?

교육에 관한 논의, 특히 교육의 위기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심충적인 위기, 즉 우리나라 자본주의와 정치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위기의 표현이며, 더 나아가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 위기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대학의 정상화를 통한 세계화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체제 민주화 정도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등 전근대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법·제도적 차원에서 확보한 공간 안에서 우리 학문의 자생적 재생산 구조를 뿐만 아니라 일도 시급하다. 과감한 교육재정 확보책을 마련하고, 국·공·사립대의 균형지원책 그리고 사립대학육성책 등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이념 차원에서는 재산권보다 인권에 기초한 교육평등 개념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중심축으로 삼아 교수의 교권과 직원의 노동권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

박거용/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삼명여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교협 교육위원회 교육정책부위원장과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역서로 『러시아 형식주의』, 『미국 문학사상의 배경』 등이 있고, "나사니엘 웨스트 소설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